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정성국 · 조정훈
김성원 · 이양수 · 우재준
김은혜 · 엄태영 · 한지아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 이를 고려할 때,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,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기업

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17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중 “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”을 “입주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이 장에서 “감면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.	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<u>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<단서 신설>	1. ----- ----- <u>입주하는</u>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